

정책세미나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본 자료는 2018년 8월 20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ONTENTS

정책세미나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I. 개최 취지	5
II.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6
III.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8
IV.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	10
V.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12

CONTENTS

정책세미나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VI. 토론내용 요약 14

「김현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실장)	14
「박희진」 (근로복지연구원 퇴직연금연구센터 박사)	15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16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센터장)	17

I. 개최 취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도달기간은 17년,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은 9년으로 예상됨
 - 과거 고령사회 도달은 2018년으로 예상되었으나 도달기간이 1년 앞당겨짐
 - * 주요국의 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일본(24년, 12년), 독일(40년, 37년), 미국(73년, 21년)
-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고령 독신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여성의 기대수명(85.2세)은 남성(79.0세)보다 6.2세 많으며, 결혼연령 격차는 약 3~5세임
 - 이를 고려하면 노후에 홀로 남게 되는 여성(고령 독신여성)의 생존기간은 약 10년임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노후빈곤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퇴직 후 연금소득 등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한 여성의 소득강화가 필요함
- 이에 본 심포지엄을 통해 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국내외 여성 관련 연금정책 특징을 기초로 사적연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사적연금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 공적부문의 경우 재정문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복지제도로 도입 후 존폐를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탄력적 제도 운영이 어려운 반면,
 - 사적부문의 경우 재정 지원 시 상대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지원이 비용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임

II.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

1. 사회적 환경: 고령화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인 고령 여성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나, 40세 이후 여성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60세 이후에는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노인 여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됨

- 60세 이상 1인 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중¹⁾은 71.5%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초고령 독신여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여성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사별 혹은 이혼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 준비가 덜 된 여성은 빈곤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비중은 30대의 경우 미혼, 40~50대는 유배우자, 60대 이상은 사별 비중이 높게 나타남

2. 경제적 환경: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 경제활동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률, 소득수준 등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발생하여 고용률 및 경제활동률이 특정 연령(30대)에서 낮은 경향이 있음
- 여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6.9%가 100만 원 미만으로 남성(29.5%)보다 1.9배 높음
- 또한, 여성은 저소득 및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어 월평균 임금소득

1)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50.2%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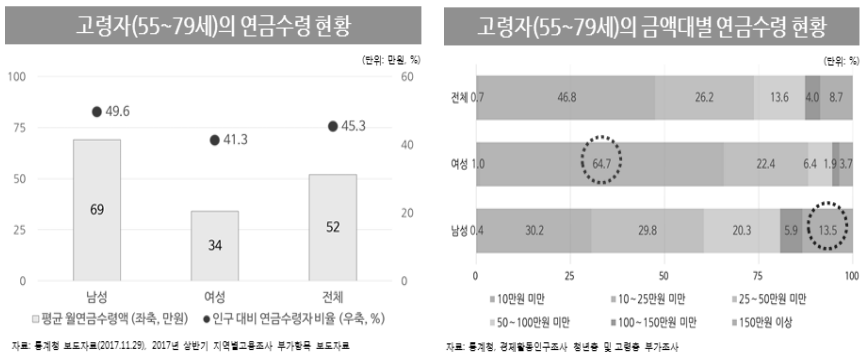
(187만 원)이 남성의 64.1% 수준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OECD 평균인 14.3%보다 훨씬 높음
-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여성이 비공식업무 및 비급여 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임

■ 특히,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 수단인 연금소득이 적어 노후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고령자 1인 가구 중 노후준비 가구는 여성(30.2%)이 남성(42.4%)보다 낮으며, 여성의 연금수령 비율도 41.3%에 불과함
 - 연금액 분포를 보면, 남성은 150만 원 이상 고연금층이 13.5%이며 연금소득 수준도 고르분포를 보이니, 여성은 10~25만 원 미만 수급자가 64.7%로 저연금에 편중됨
- 전업주부(비경제활동자)는 현업여성(경제활동자)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 수준과 가입의향이 모두 낮음
 - 전업주부와 현업여성의 개인연금 가입 수준은 각각 35.2%와 41.8%임
- 여성의 노후준비 부족으로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장소득기준 여성 가구주의 상대빈곤율은 21.6%(전체 14.7%)로, 남성(17.4%)에 비해 4.2%p 높음

그림 II-1 고령자(55~79세)의 연금수령 현황 및 금액대별 연금수령 현황



Ⅲ.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1. 여성 관련 연금정책 현황

-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을 띠
 -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과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수준을 결정함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부부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로, 황혼이혼 증가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혼인기간 미충족 비율(22.9%)도 상당함
 - 출산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으로 연금수급권이 제약된 만큼 보상함

그림 Ⅲ-1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여성 관련 연금 유형 및 현황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관련 연금 유형		여성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현황				
		(단위: 천명, %)				
부양가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고령부모에 대해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 부가적으로 지급	구분	2012	2013	2015	2017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40~60% 지급	노령연금	869	869	982	1202
분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였던 자(5년 이상 혼인기간)가 이혼 시 노령연금의 50%지급	분할연금	7.3 (0.8)	8.6 (1.0)	13.0 (1.3)	22.4 (1.9)
출산크레딧	•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8개월 ~ 50개월의 가입기간 인정	주: 괄호 안은 노령연금 대비 분할연금 비율임 자료: 국민연금 연구원 홈페이지				

- 사적연금은 판례를 통해 이혼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분할해 주는 사례가 있을 뿐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
 - 퇴직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판례를 통해 분할연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

그림 III-2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및 판례

구분	판례사례	주요 내용	관련 규정
퇴직금	존재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 필요 •이혼 시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잠작가능 사유에 해당	미존재
퇴직연금	미존재	-	
개인연금	존재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예상액 산정 후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

- 우리나라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함
 - 성별 소득격차가 성별 연금급여 격차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보완 기능이 미흡함
 -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이로 인해 연금가입률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할 우려가 존재함
 -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 및 연금가입 기회를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남
 -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공적연금에만 일부 존재하고 사적연금에는 존재하지 않음

그림 III-3 우리나라 여성 관련 연금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연금정책의 주요 기능	공적연금	사적연금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일부 존재 (출산크레딧)	없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없음	없음
소득재분배 등 취약계층 보호 기능	존재	없음

IV. 해외의 여성 관련 연금정책 사례

1. 공적연금 부문

■ 선진국의 여성 관련 공적연금제도에는 배우자연금(Widows' Pension),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분할연금, 육아·출산크레딧 등이 있음

- 배우자연금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여성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됨
- 유족연금은 우리나라보다 혼인기간 조건이 짧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으며, 분할연금의 경우 동거 및 혼인관계 유지 시에도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등 광범위한 여성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 한편, 연금개혁 과정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의 노후빈곤 완화와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 육아, 돌봄크레딧 등을 도입함

그림 IV-1 선진국의 여성 관련 공적연금제도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육아크레딧	출산크레딧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 : 부양가족연금	모든 국가	대다수 국가 도입	일본, 유럽 대다수 국가 (우리나라 無)	대다수 국가 도입

2. 사적연금 부문

■ 선진국의 여성 관련 사적연금제도에는 배우자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출산지원금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전업주부),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배우자연금 계좌를 사적연금제도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근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구주)가 동 계좌에 보험료를 대납(미국 Spousal IRA, 캐나다

Spousal RRSPs, 호주 Spouse Contributions)하고 세제혜택을 받음

-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이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함
 - 호주의 유족일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은 유족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함
- 칠레는 출산 또는 입양 시 여성의 연금계좌에 출산지원금을 납입해주며 65세 이후 인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한 여성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그림 IV-2 주요국의 배우자 대상 사적연금 운영 사례 및 기여금 한도

배우자 대상 사적연금 운영 사례				기여금 납입한도 변화 (미국, 캐나다)					
국가	제도명	가입대상	세제혜택	(단위: USD)					
미국	Spousal IRA	저소득 배우자, 무직 배우자, 동거인	보험료 납입자 (남편)에 대한 세제혜택	미국 IRA	98-01	02-05	06-07	08-12	13-18
캐나다	Spousal RRSPs			전통형 IRA	2,000	3,000	4,000	5,000	5,500
호주	Spouse Contribution			배우자 IRA	2,000	3,000	4,000	5,000	5,500
				추가기여	-	500	1,000	1,000	1,000
				(단위: CAD)					
				캐나다RRSP	2014	2015	2016	2017	2018
				납입한도액	24,270	24,930	25,370	26,010	26,230

자료: DQYD(2017)
기원: Royal Bank

3. 시사점

- 선진국에서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공적부문의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독립적 연금수급권과 함께 파생적 연금수급권 보장을 중요시함
- 한편, 사적부문에서는 전업주부 대상 별도의 사적연금 운영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등은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사적연금제도로 확대 하였으며,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V. 여성 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1. 여성 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정책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정부재정지출 소요액은 다음과 같음

- (세액공제만 허용 시 효과) 현행 납부액 범위 내에서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연금소득 개선효과(=세액공제액/납부액)는 12.6%이며, 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출효과는 연간 3,910억 원 규모임
 -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270만 원,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4만 원 수준임
-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 전업주부의 납부액이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연금소득 개선효과는 12.7%이며, 재정지출효과는 연간 4,110억 원 수준임
 -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258만 원,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3만 원 수준임

2. 여성 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 연금제도의 기여성 원칙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에 있어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요구됨
 -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발생을 보완하되 남성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 확대 정책이 필요함
 -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활용하여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보상하고,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사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선진국 공적연금제도에서 추진하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만큼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선진국은 지속적인 여성 관련 공적연금 개선에도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상황임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및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선진국보다 악화되어 있으므로 공적연금 확대 외에 사적연금과의 협조적 대응이 요구됨
-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적연금정책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입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 있음
 - 둘째, 미국이나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제도화되고 부부연생연금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되, 종신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가입유인 제고를 통해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관련 재원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줄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조세수입원으로 충당한다면 재정중립성도 충족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여성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정년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취지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에 대해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VI. 토론내용 요약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실장)

- 사망과 이혼으로 인해 여성이 1인 가구화될 확률이 높아 공적연금은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상황임
 - 유족연금은 평균연금액이 28만 원이며, 최대 수령금액은 100만 원 수준임
 - 수급자 70만 명 중 63만 명이 여성으로, 여성수급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음
 - 분할연금은 평균급여액이 19만 원이며, 최대 수령금액은 139만 원임
 - 수급자 2만 6천 명 중 여성수급자는 2만 3천 명임
- 최근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유족연금의 급여지급률 상향조정, 유족연금 의제가입기간 확대,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요건 축소, 출산크레딧 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현재 급여지급률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조정(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유족연금 지급 시 20년 가입을 전제(의제가입기간)로 하고 있으나, 해당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 연금액의 50%를 분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혼시점과 분할연금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입이력분할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혼인기간 유지”를 충족해야 하나, 해당 기간의 단축을 검토 중임
 - 한편, 국내 합계출산율(2017년 기준 1.05명)을 반영하고, 대상자(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를 확대하여 첫째 자녀 출산자에게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전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의 경우 개별적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파생적 수급권으로 볼 수 있는 유족연금 자체도 강화되고 있음

「박희진」 (근로복지연구원 퇴직연금연구센터 박사)

- 사적연금의 경우 노동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을 빼고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미비 시 연금정책 또한 미비한 결과를 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시장 환경하에서 연금정책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함

- 여성에 대한 연금정책 설계 시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조정·규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과 더불어, 여성들이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가족 내에서 양육, 출산, 노인케어 등에 있어서 성별 균등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여성을 위한 사적연금의 경우 “노동을 통한 기여”와 “가정에 대한 기여”를 연계하여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나서 출산크레딧 등과 같은 정책도구를 어떻게 연계하여 성별 격차를 줄일 것인지 등 순차적 접근이 필요함

- 여성 관련 연금정책에 있어 고려할 점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로기간(기여기간)이 짧고 기여금액 자체도 적어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적연금정책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DC 제도하에서 기여기간이 짧고 불연속적이며, 기여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어야 함

- 여성을 위한 사적연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하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각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나, 무게 중심은 국민연금에 있어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의 실질가치가 유지되고, 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작동함

- 국민연금을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여성이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 자격으로 가입할 경우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현재 임의가입자는 33만 명에 불과함
 - 본인의 국민연금이 없으면, 남편 생존 시 남편의 노령연금에 의존하고 남편 사망 시에는 노령연금의 40~60%인 유족연금에 의존하게 됨
 - 그러나 본인이 가입자가 되면 배우자 생존 시에도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나, 배우자 사망 시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의 합산액'과 '유족연금' 중 급여액이 높은 연금을 선택하게 됨
 - 따라서 임의가입 유불리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준, 그리고 부부의 기대여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출산크레딧을 여성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여하는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야 함
 -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나, 현재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제공되므로 여성의 노후소득을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한 해 이혼건수가 10만 건 이상이며, 혼인기간 20년 이상 40대 중반 이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출산크레딧을 발생 시점 여성의 수급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발생 시 부모가 합의하에 수급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출산크레딧의 원래 취지와 달리 남성에 대한 경제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배우자 부담금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부담금 제도는 남자·여자, 법률혼·사실혼 모두에게 허용하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계좌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 주고, 국가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임
 - 2017년 7월부터 배우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한도를 3배가량 상향 조정함
 - 호주정부가 배우자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퇴직연금 법정 부담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배우자부담금 제도를 통해 적립한 금액을 인출하여 노후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조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IRP 가입 대상으로 전업주부를 포함시키고, 배우자 기여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노후소득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조선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센터장)

■ 본 발표는 고령화 및 여성 노인의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정책 일환으로 사적연금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여성연금정책 개선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여성 관련 연금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성 관련 연금정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파생적 수급권을 중심으로 여성 관련 연금을 얘기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 증가 등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본 연구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2차 소득자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인 경우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발제자는 고령여성의 증가, 고령여성의 빈곤심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를 여성연금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30대 1인 여성 가구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계층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 또는 양육크레딧을 통한 여성의 노후소득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함

■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분할이 판례가 아닌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공적연금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의 여성에 대한 사적연금 지원사례만을 부각시킬 경우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제도를 같이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칠레의 출산지원금을 사적연금에 적용하자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에서도 출산·양육크레딧이 공적연금에도 적용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정책세미나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발행일 | 2018년 9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